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5년 4월 24일

나. 회부일자 : 1995년 4월 24일

3. 제안이유

- 감면조례 제5장 서민주택건설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중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관청의 명칭 변경 관련 조문과
- - 주택조합의 신탁등기와 관련 과세면제의 내용중 불합리한 점을 정리
코자하는 것임

4. 주요골자

- 건설부장관 →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명칭 변경
-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 주택조합
명의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 조합은 현행 조례대로 면제하되,
 - 신탁종료 또는 해지로 인해 조합원 명의로 이전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 납세의무의 성립은 조합원명으로 이전등기하는 때로 함.

5. 검토의견

충청북도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관련 현행조례 제5장(서민주택건설등의지원을 위한감면) 제15조 조분 중 행정관청의 명칭변경과 아울러 과세감면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 제15조1항의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서민주택건설과 관련 주택조합을 구성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조합이 신탁법에 의해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면제대상이 되고 있고,

입주자 명의로 이전시는 신탁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 이전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혀 과세할 수 없게되는 문제 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현조례의 주택조합에 대한 면제규정을 개정하여 조합원이 조합명의로 신탁 등기하는 경우에 조합은 현행대로 면제하되

신탁종료 또는 해지로 인해 조합원 명의로 이전시에는 면제대상에서 배제 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되

과세시기는 조합원이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때로하여 과세행평을 유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개정조례안은 과세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참 부

충청북도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